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69호 2020. 12. 3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417호)
-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예천군 조례 제241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3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17호

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소규모 공동주택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”을 “공동주택의 지원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군수”를 “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, 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”를 “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지원대상 등)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

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. 다만,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1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·보수
2. 상·하수도시설의 유지·보수(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)
3.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, 석축, 절개지 등의 보수
4. 가로등, 보안등의 유지·보수
5.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차단기의 보수·설치
6.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·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·개선
7.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,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·보수
8. 어린이놀이시설,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, 공동 화장실의 보수
9.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(크린넷)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·개선 등 유지관리비
10.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(App)구축 운영
11.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단지 :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
2.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단지 : 총 사업비의 80% 이내 지원
3.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인 단지 :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
4. 총 세대수가 1,000세대 이상인 단지 : 총 사업비의 60% 이내 지원

③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
2.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최초 신청 시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
2. 2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80% 이내 지원
3. 3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
4. 4회차 신청 시 총 사업비의 60% 이내 지원
5. 5회차 이상 신청 시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
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으로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)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원절차)”를 “(관리비용의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입주자대표에게통보”를 “입주자대표에게 통보”로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공동체 활성화 지원) ① 군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모계획을 수립·공고한다.

② 제1항의 공모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(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)

2. 사업계획서

3.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

4.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

5.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

제7조의3(사업착수) 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(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·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) 하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

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을 포함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군수는”을 “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, 제6조제3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3조,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15조 중 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”을 “별지 제5호서식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본문 중 “별지 제4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6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별지 제5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7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별지 제6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8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서면”을 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별지 제8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0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별지 제9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1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10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2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

신청자	공동주택명		동 수	
	주 소		세대수	
	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		준공일	

신 청 내 용

사업명	소요예산			사 업 내 용	비 고
	계	보조금액 (신청액)	자 체 부담액		
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관리주체

(인)

예천군수 귀하

[구비서류]

1.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(단,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) 1부.
2. 사업계획서(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, 시공도면 포함) 1부.
3.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.
4. 공법 및 공정표 1부.
5.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(한글파일의 사진대지)

【별지 제1호의2서식】

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

공고사업명		20 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			
사 업 개 요	사 업 명				
	신청단지	단 지 명		동 수	
		주 소		세 대 수	
		입 대 의 의 결 일		사 용 검 사 일	
		공 동 체 활 성 화 단 체 명			
	사업목적				
	사업내용	세부사업명	세부사업내용		
사 업 예 산		총사업비	보조금(신청사업비)	자 부 담	
		천 원	천 원(%)	천 원(%)	
20 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: (서명/날인)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: (서명/날인) 관리사무소 소장 : (서명/날인) 예천군수 귀하					
첨부서류		1.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. 2. 사업계획서 1부. 3.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1부. 4.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1부. 5. 기타 공모사업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사 업 착 수 보 고 서		
계 약 자	발 주 자	
	계약상대자	
계약내용	공 사 명	
	계 약 금 액	
	총 공사 금액	
	계약 보증금	
	착수 년월일	
	준공 예정일	
	기 타 사 항	
『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』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통보인 관리사무소장 (인) (전화 :) 예천군수 귀하		
구비서류 : 1. 계약서 사본		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

신청자	공동주택명		동 수	
	주 소		세대수	
	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		준공일	

신 청 내 용

사업명	소요예산			사 업 내 용	비 고
	계	보조금액 (신청액)	자 체 부담액		
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관리주체

(인)

예천군수 귀하

[구비서류]

1. 시공 전·후 현장사진 1부.
2.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1부.
3. 정산내역서(증빙자료 첨부) 1부.

【별지 제4호서식】

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			
신청자	단 지 명		
	주 소		
정 산 내 용			
사 업 명			
정산금액	계		
	보조 금액		
	자체부담 금액		
공사 업체명(연락처)			
착 공 일		준 공 일	
『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』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관 리 사 무 소 장 (인) (전화 :) 예천군수 귀하			
구비서류 : 1. 공사완료확인서 및 준공내역서 2. 지출증빙서류(신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) 3. 공사 전·중·후 사진 4.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			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

신 청 인	성 명	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)				
대 리 인	성 명	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)				
피신청인	성 명	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)				
분쟁대상 건축물 현 황	위 치				면 적	m ²
	지 역		지 구		지 목	
	용 도		구 조			
	건축면적	m ²	연면적	m ²	층 수	지상 층
	건 폐 율	%	용적율	%		지하 층
분쟁조정 신청내용						
신청취지 및 사유						
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						
첨부서류						
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별지 제6호서식】
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				
사 건 명				
신청일자	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대 리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피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분쟁조정 신청내용				
분쟁조정 조 정 안				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,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(인) (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) 귀하				

【별지 제7호서식】
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				
사 건 명				
신청일자	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대 리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피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분쟁조정 신청내용				
분쟁조정 조정내용				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1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·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위 신청인 (인) 위 대리인 (인) 위 피신청인 (인) 위 대리인 (인)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(인)				
※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				

【별지 제8호서식】
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

사 건 명				
신청일자	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대 리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피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출 석 대 상 자	성 명	주소 또는 소속		자 격
				참고인 또는 당사자
출석요구일자	년 월 일 (:) ※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			
출 석 장 소				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(인) (출석대상자) 귀하				
[주의사항]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, 주민등록증,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				

【별지 제9호서식】

의견제출서

분쟁조정 신청내용				
당사자 (참고인)	성명(명칭)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의 견				
기 타				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(서명 또는 인)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
비 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		

【별지 제10호서식】
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(거부·중지)통보서

사 건 명				
신청일자	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대 리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피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분쟁조정 신청내용				
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				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을 종결(거부·중지)합니다. 년 월 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(인) (공동주택관리 분쟁 각 당사자) 귀하				

【별지 제11호서식】

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

대상단지	단 지 명		전화번호 (관리사무소)	
	주 소			
요 청 인 대 표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동의현황	동의인수 (동의율)		전체세대수	
감사대상	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(), 관리주체·관리사무소장(), 선거관리위원회()			
감사사유	※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 • 제2호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() • 제3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() • 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()			
감사 요청 사항·내용	※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,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			
감사제외 대 상	1.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.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.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.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.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		
「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.				
년 월 일 요청인 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				
예천군수 귀하				
첨부서류	1. 요청인 연명부 2. 관련 증빙자료			

【별지 제12호서식】

요 청 인 연 명 부

☐ 단 지 명 :

번호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	주소	서명 또는 날인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16					
17					
18					
19					
20					
21					
22					
23					
24					
25					

◇개정이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공용시설물 관리 비용의 지원 기준,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범위의 구체화 및 지원 기준 규정(제6조)

○ 사업 지원 범위의 구체화

- 현행 : 5개 사항
- 개정 :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1개 사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2개 사항

○ 사업 지원에 대한 기준 규정

- 10년 경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: 공동주택 총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(총 사업비의 60~90% 이내 지원)
-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: 신청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(총 사업비의 50~90% 이내 지원)

나.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(제6조의2)

-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
다.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규정(제7조의2)

-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
-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

라.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착수 절차 규정(제7조의3)

- 착수기간 : 보조금 지원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
-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착수 즉시 군수에게 사업착수보고서 제출

마.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검사 및 구비서류 규정(제10조)
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서류 및 장부 검사 가능
- 보조금 지출 증명 서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 등 제출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
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3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18호

예천군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원활한
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
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및 명칭) ①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
조직위원회(이하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
의한 법인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3조(설립 및 운영)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

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,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출연금 등의 지원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조직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공유재산의 대부)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.

제6조(공무원의 파견) 군수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행정지원) 군수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·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보고 및 검사)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제정이유

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2022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목적(제1조)

-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

나. 법인격 및 명칭(제2조)

- 민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명칭은 2022 예천아시아 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로 함

다.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(제3조)

-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의함

라. 조직위원회 지원 사항(제4조 ~ 제7조)

- 예산 범위 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
- 공유재산 대부
-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
- 관련사무 범위 내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 요청

마. 보고 및 검사(제8조)

-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, 서류제출요구 및 검사
-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 명령 및 기타 필요 조치 등